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 2026. 10. 02. 고용노동부훈령 제45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이하 “법 위반”이라고 한다)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노동감독관이 수행하는 법률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에 적용되며, 범죄 수사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감독관 직무규정」 및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른다.

③ 노동감독관의 수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법절차의 준수) 노동감독관은 수사 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제4조(관할) ① 노동감독관은 소속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를 수행하며, 사건의 관할은 「노동감독관 직무규정」 제35조 및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직무규정」 제25조에 따른다.

② 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
2. 발생한 사건의 관할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3.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4. 긴급을 요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경우

③ 피의자가 동일한 신고사건으로서 둘 이상의 지방관서에 속하거나,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기관은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할 수 있다.

제5조(제척) 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수행에서 제척된다.

1. 노동감독관 본인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인 경우
2. 노동감독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

3. 노동감독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 이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었던 경우

제6조(기피) ① 신고인 또는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건 담당 노동감독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려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노동감독관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노동감독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기피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상 사건이 종결되거나 송치된 경우
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기존과 다른 사유로 기피 신청하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추가로 한 차례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3.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4. 기피 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③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피신청서를 사건 담당 노동감독관이 소속된 지방관서의 장(청장 및 지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피신청서를 심사하여,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 담당 노동감독관을 재지정하

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피) ① 노동감독관은 본인이 담당하는 사건의 사업장과 근로관계, 임원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의 장은 회피신청서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회피신청서를 심사하고, 회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 담당 노동감독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수사서류 저장·보관) 노동감독관은 수사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38조에 따른 노동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사의 개시, 영장의 신청 및 집행, 사건의 송치 등 업무 처리 과정을 노동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기록하여야 한다.

제2절 수사조직과 수사지휘

제9조(본부의 역할)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전국 단위의 수사 지원 및 수사 정책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 지원 기능

가. 법 위반사항의 파급력이 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법령 해석 및 인력 지원 등 수사 지원

나. 제68조에 따라 본부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방고용노동청

(이하 “청”이라 한다)에 두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다. 둘 이상의 청에 걸친 광역 사건의 관할 조정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사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사 정책 기능

가. 수사 관련 훈령·예규·지침의 입안 및 시행
나.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다. 수사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라. 그 밖에 장관이 수사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수사에 대한 지도·점검 기능

가. 지방관서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감사
나. 가목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필요한 사
항의 조치 요구

제10조(지방관서의 역할) ① 청 및 지청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청은 소속 지청의 수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청이 직접 수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하여 청에서 수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중요사건
2. 둘 이상의 지청에 걸친 사건
3. 지청장이 청의 직접 수사를 요청한 사건

④ 청장은 지청의 수사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사지휘 주체) ①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구역 내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의 과장(「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은 지방관서의 장을 보좌하고, 그 명에 의하여 수사의 지휘·감독을 한다.

③ 지방관서의 팀장(「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팀장을 말한다)은 팀에 소속된 노동감독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노동감독관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범죄의 수사에 종사한다.

제12조(수사지휘 방법 및 내용) ① 수사지휘는 수사의 적법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관서의 장 또는 과장(이하 ‘수사지휘권자’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이 때 수사지휘권자가 노동감독관에게 수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사건기록을 요청한 경우 노동감독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범죄인지에 관한 사항

2. 체포·구속,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

3. 사건의 송치 및 송치 의견에 관한 사항

4. 검사에 대한 지도·조언 요청 사항 및 이행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수사지휘권자가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의하거나, 노동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재 시 의견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감독관은 수사지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자는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두로 지휘할 수 있다. 이 때 노동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수사지휘 내용 및 이행결과 등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⑤ 수사지휘권자는 노동감독관이 적정한 수사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① 노동감독관은 수사와 관련된 수사지휘권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사지휘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지휘권자는 이의제기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지휘서에 따라 신속하게 재지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노동감독관은 상급 수사지휘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급 수사지휘권자는 이의제기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지휘서에 따라 신속하게 재지휘하여야 한다.

④ 상급 수사지휘권자가 없거나, 제3항에 따른 상급 수사지휘권자의 재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급기관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사심의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이의제기서에 대해 심의·의결한 경우 본부 또는 청은 신속하게 심의 결과를 해당 지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관서의 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수사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감독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절 협력 및 지도·조언

제14조(상호 협력 원칙) ① 노동감독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노동감독관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도·조언을 위해 노동감독관에게 모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조언 요청 및 방식) ① 노동감독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검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조언 요청 내용 및 검사의 지도·조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없이 그 지도·조언 요청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지도·조언을 하는 경우 지도·조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두·전화 등의 방식으로 지도·조언을 하는 경우 지도·조언의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제16조(지도·조언 사건 처리) ① 노동감독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받은 경우 그 지도·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 및 그 이행 내용을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 지도·조언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로 지도·조언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송치할 때에는, 지도·조언 이행을 위한 조치 내용 및 이행이 어려운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절 수사의 개시

제17조(범죄인지 전 조사) 노동감독관은 진정·탄원 등 신고사건 접수(고소·고발 사건을 제외한다)에 따라 범죄인지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밖에 신문·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 진상을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수사의 개시) ① 노동감독관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범죄인지 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1. 신고사건 처리 결과, 「노동감독관 직무규정」 별표 3 및 별표 4 또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직무규정」 제30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범죄인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감독 결과, 「노동감독관 직무규정」 제21조 또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직무규정」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직무규정」 제3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업장 감독, 노동동향 파악 등 직무수행 중에 발견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른 시정지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하였으나, 시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주요 근로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즉시 범죄인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노동감독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피의자의 태도, 피해의 규모와 확산 가능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④ 노동감독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범죄인지서) ① 노동감독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지방관서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경력, 수사경력,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될 법조문을 적어야 하며,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와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또는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제2항의 인지 경위에 해당 감독 또는 신고사건의 처리 경과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의 범죄인지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20조(고소·고발의 수리)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된 관할의 노동감독관이 우선 수리하여야 한다. 이 때 접수한 지방관서에 관할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고소의 대리) ① 노동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노동감독관은 제2항에 따른 고소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④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수사사건 처리 기간) ① 노동감독관은 고소·고발, 범죄인지 사건(사

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7호부터 제17호까지의 법률 위반에 한한다)은 고소·고발장 접수일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장사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과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③ 노동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고소인·고발인·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고소인·고발인 진술조서 등) ① 노동감독관은 구술로 제출된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으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보충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자수하는 경우 진술조서의 작성 및 추가 진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했을 경우,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노동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노동행정포털 등 고소인등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④ 노동감독관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서 또는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노동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25조(반의사불벌죄의 처리) ① 노동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노동감독관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2항에 다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범죄인지 전 조사의 경우: 체불금액 및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결
2. 고소·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의 경우: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 다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고발장의 기재사실 또는 고소·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 의견으로 송치

④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제3항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① 노동감독관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등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5절 임의수사

제27조(출석요구) ① 노동감독관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기재하여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사용하여 담당 노동감독관 명의로 발부하되, 별지 제17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노동감독관은 제1항 본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의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노동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노동감독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 및 변호인과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⑤ 노동감독관은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방과 후 시간 또는 휴일 등 학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출석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8조(심야조사 제한) ① 노동감독관은 조사·신문·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 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노동감독관은 조사·신문·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노동감독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노동감독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 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노동감독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휴식시간 부여) ① 노동감독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노동감독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식시간의 부여 내역은 제37조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같은 법 제2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노동감독관은 그 관

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③ 노동감독관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사람과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④ 노동감독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 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신문 또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피해자 이외의 사건관계인 조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2조(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의 고지)

① 노동감독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법 제244조의3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고지는 조사 회차를 달리하거나 담당 노동감독관이 교체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고지 등을 하여야 한다.

제33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노동감독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여 범죄사실 및 정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질문은 지양하여야 한다.

1. 성명(이명·위명·통칭 또는 별명을 포함한다),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및 출생지

2.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주거, 설립목적 및 기구

3. 전과의 유무와 기소유예, 선고유예,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4. 병역관계

5.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 생활정도 및 건강상태

6.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

7.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8.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9.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11.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및 근로자 수

12. 위반 법령 조항 및 위반 내용

13. 피해 근로자 수 및 피해 내용

14. 임금채불 등 금전적 피해의 경우 피해 금액 및 피해 기간

15. 그 밖에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

16. 피해 회복 계획

제34조(신고인 등 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사항) 노동감독관은 신고인

등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조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피의자와의 관계
2. 피해자의 피해상황
3.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피해회복의 여부
5. 처벌희망의 여부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제35조(조서와 진술서) ① 노동감독관은 피의자의 진술과 신고인 등 사건 관계자의 진술은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진술한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 진술인이 기재 내용의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진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인으로 하여금 그 취지를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따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조서에 편철한다.

④ 노동감독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어야 하며,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노동감독관은 피의자, 신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거나 진술 사항이 복잡하여 서면 진술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자료·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노동감독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을 들을 수 있다.

② 노동감독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자료 입수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제37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노동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지 제22호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도착 시각과 조사 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이유,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이유와 중단·재개 시각, 휴식시간의 부여 내역, 변호인의 참여 및 의견 진술 내역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떠난 시각,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변호인

참여 여부

③ 작성된 수사과정확인서는 피조사자에게 확인을 거쳐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간인을 받은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8조(현장조사) 노동감독관은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현장을 직접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39조(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 ① 노동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신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 단계 포함)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영상녹화를 시작한 후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③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동의서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2항제3호의 진술거부권 등을 제외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0조(영상녹화물의 제작·보관)** ① 노동감독관은 영상녹화를 한 경우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 2개를 제작하여, 그 중 하나에 담긴 파일의 해시값을 피조사자에게 확인하게 하고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한 후, 봉인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와 함께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 ② 노동감독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③ 영상녹화물의 표면 또는 관리정보에는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절 강제수사

- 제41조(체포영장의 신청)** ① 노동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여 출석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체포영장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

다.

③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청서에 적고,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구속영장의 신청) ① 노동감독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1. 명백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체불하거나, 임금·퇴직금 등을 집단 체불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경우
2. 임금체불로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3. 폭행·협박·감금 등 신체상·정신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키거나 이 과정에 임금을 체불한 경우
4. 여성, 장애인, 연소자 등 취약 근로자를 법률에 위반하는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
5. 노동쟁의 과정에서 중대·명백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경우
6. 노동조합의 단결, 운영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중대하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7.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피해규모나 경위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 노동감독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와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

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구속사유, 영장 발부 및 집행 일시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체포·구속영장의 집행과 권리 고지) 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은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에 따른다.

② 노동감독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노동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권리를 고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체포·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① 노동감독관은 영장에 따라 피의자

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피의자가 수령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① 노동감독관은 체포·구속영장의 유효기

간 내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였거나 집행이 불가능·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영장이 여러 통 발부

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발행통수와 집행불능 등 반환사유를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고,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노동감독관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다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그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제47조(영장의 제시 및 사본 교부) ① 노동감독관은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검증할 장소·신체·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영장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영장 사본의 교부는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복사한 사본으로 교부하며,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교부할 경우에도 사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노동감독관은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종전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다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48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① 노동감독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의 일시·장소, 압수 경위 등을 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수량 등을 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노동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노동감독관이 유류물 또는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의 제출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① 노동감독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색증명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50조(검증조서) ① 노동감독관이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장소, 검증 경위 등을 적은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형상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과 형상을 상세

히 기재하거나 촬영하는 등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조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노동감독관은 컴퓨터용 디스크, 사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급여관리 프로그램, 근태관리 서버,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한 압수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반출할 수 있다.

제52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노동감독관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하거나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노동감독관은 환부 또는 가환부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 후 신속히 환부하고, 별지 제39호서식에 따

라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④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등 사업 운영에 계속 필요한 자료는 사본 또는 전자적 복제본을 확보한 후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노동감독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제54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노동감독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 노동감독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제56조(출국금지·출국정지 및 그 해제의 요청) ① 노동감독관은 범죄 수사

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한 피의자 등에 대하여 본부에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 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요청서와 요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1개월 이상 조치 요청이 필요한 경우 “기소중지결정서” 또는 “체포영장”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출국금지(정지)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된 경우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④ 출국금지(정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금지(정지)가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정지)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본부에 연장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본부에 해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노동감독관은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출국정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재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7조(입국 시 통보 요청 및 해제) ① 노동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성명·국적·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담당자 연락처 및 요청사유를 기재하여 본부에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입국 시 통보 조치 요청 시 요청기간을 입

국 시까지로 하며, 입국 시 통보요청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본부에 입국 시 통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경찰장구의 사용) ① 노동감독관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여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노동감독관은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제1항의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관서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2.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때
4.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제59조(지명수배·통보 및 해제) ① 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를 의뢰한 후 관련 서류를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제2항에 따른 지명통보 대상자 중 지명수배를 할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② 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 통보 의뢰한 후 관련 서류를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공소청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1. 범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③ 노동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한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자수한 경우

2.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

3. 공소시효의 완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피의자 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④ 노동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한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0조(지명수배자 신병인수 등 협조) ① 수배한 지방관서의 노동감독관은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을 초과하여 구

속영장의 청구 없이 신병을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 지역 이외에 소재한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관서의 관할 지방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신병인수 및 피의자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뢰받은 지방관서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1조(지명통보자 소재 발견 시 조치) ① 노동감독관은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지명통보된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 및 통보관서를 고지하고, 발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명수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영장 신청기록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소재발견 보고서,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불출석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할 경찰서에 지명수배 의뢰를 한 경우 지명통보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절 사건송치 등

제62조(수사자료표 작성) ① 노동감독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고소·고발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노동감독관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경우 수사자료표 송부대장에 관서별·연도별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후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범죄통계원표의 작성) ① 노동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범죄통계원표 중 피의자표는 피의자별로 각 1부, 발생 및 검거원표는 사건별로 각 1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범죄통계원표대장에 기록한 후 송치서류 마지막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64조(사건의 송치) ① 노동감독관은 고소·고발사건과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동감독관은 송치서류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에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④ 제2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이 경우 순서대로 각 장마다 2부터 시작하여 2, 3, 4 등으로 면수를 표시해야 한다.

⑤ 노동감독관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공소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⑥ 노동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정보시스템에 따른 정식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속사건

2.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거나 범죄혐의가 중한 사건

3.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증거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임금채불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거나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건

5. 불기소 의견인 사건

6. 기소중지 의견인 사건

7. 참고인중지 의견인 사건

⑦ 노동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

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노동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고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 처리시스템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제65조(보완수사요구의 이행) ① 노동감독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여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통보서를 작성하고 사건 기록과 함께 공소청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못하여 보완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지방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수사기록 일체를 해당 관서로 송부하고, 해당 공소청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의 처리) 노동감독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법령위반 등이 확인되어 검사가 노동감독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경우 지방관서

의 장은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체없이 사건 담당 노동감독관을 교체
2. 요구사항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한 해당
공소청의 검사장에게 통보

제67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노동감독관이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② 지방관서의 장은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소인등이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어 상급관서(‘청’을 말한다)에 다시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청장은 제2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8절 수사심의위원회

제68조(설치 및 구성) ① 수사의 공정성과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부와 청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③ 장관 또는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1.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수사업무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노동정책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관계, 산업안전보건, 산업의학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재직 중인 사람(청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은 5급 이상으로 한다)

④ 장관 또는 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제69조(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및 그들의 변호인·대리인을 말한다)이 노동감독관이 행한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수사를 수행한 지방관서의 장에게 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 사건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
3. 주요 수사정책 등에 대한 자문 및 권고
4. 장관, 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0조(제척·기피·회피) 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은 회피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담당 노동감독관,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2조(심의의결의 효력 등) 장관 또는 지방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 및 위원회의 사무에 관여한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장관 또는 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제70조 또는 제73조를 위반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른 노동감독관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일(2026년 12월 8일) 전까지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행한 수사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노동감독관 직무규정」 및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 작성·보관 중인 장부, 비치서류 및 사건기록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보관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감독관이 행한 수사 및 이에 부수하는 처분·통지는 이 규칙에 따른 노동감독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및 정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노동감독관 직무규정」 및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직무규정」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기 피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사건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주 소			

아래 사건의 대상감독관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번 호	-			
대 상 감 독 관	소 속		성 명	
기 피 신 청 이 유				
◆ 아래의 사유 중 해당사항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감독관이 다음에 해당됨 △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임 △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임 △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었던 사람임 ☐ 불공정 수사를 하였음 ☐ 기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음				
◆ 위에서 체크한 해당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통지방법	☐ 서면	☐ 전화	☐ 문자메시지	☐ 기타(전자우편, 팩스 등)

0000. 00. 00.

신청인

(서명)

OO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OO지 청 장) 귀 하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

귀하의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접 수 번 호				
결 정 내 용	1. 수용 (선택) : 담당 노동감독관 재지정 2. 불수용 (선택) :			
결 정 사 유				
참고사항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회 피 신 청 서

성명		직급	
소속부서			
대상사건	사업장명		
	접수번호		
회피신청 사유 (해당란 체크)	☐ 본인이 담당하는 사건의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있는 경우 ☐ 본인이 담당하는 사건의 사업장과 임원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 사유			
첨부서류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피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고용노동청장(OO지청장) 귀 하

수 사 지 휘 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접수번호		사건번호	
피 의 자			
담당 감독관	소속 :	직급 :	성명 :

< 지 휘 내 용 >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참 조 :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0000-000000	사건번호	0000-000000
피 의 자					
죄 명					
사건개요					
이의제기할 수사지휘내용					
이의제기 내용 및 사유					
첨부사항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수사심의위원회 심사 신청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OO지방고용노동청 수사심의위원회

참 조 :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합니다.

사건접수일자		접수번호	0000-000000	사건번호	0000-000000
피 의 자					
죄 명					
사 건 개 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사유

- ☐ 상급 수사지휘권자가 없는 경우
- ☐ 상급 수사지휘권자의 재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지휘내용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지도·조언 요청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내 용				

비 고	
-----	--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내부결재

참 조 :

제 목 : 범죄인지 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OOOO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등록기준지	

2. 범죄경력자료

3. 범죄사실의 요지

4. 죄명 및 적용법조

5. 수사단서 및 범죄인지 경위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내부결재	
참 조 :	
제 목 :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	
아래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합니다.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수 사 진 행 내 역	
연 장 사 유	
연 장 기 간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 동 감 독 관 (인)	

수사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민	원	명	
접	수	당	초
년	월	처	리
		기	한
연 장 사 유			
처	리		
예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사건 수사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OO지 방 고 용 노 동 청 (OO지 청)

수 신 : 000 귀하

제 목 :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

귀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접 수 번 호
주 요 진 행 상 황	
담 당 자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OOOOOOOO과 노동감독관 000 ☎ 02-0000-0000

OO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OO지 청 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따른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

1. 귀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기한 임금 등 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2.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귀하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귀하가 체불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문) 귀하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노동감독관으로부터 고지 받았나요?

(답) (자필 기재)

(문) 귀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할 생각이 있나요?

(답) (자필 기재)

(문) 귀하는 동일한 체불사건에 대해 다시 신고할 생각이 있나요?

(답) (자필 기재)

20 . . .

확인자:

(인)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수 신 : 000귀하

제 목 : 공무원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주거					
	소속(직위)	소속(직위)					
사 건 번 호		사건번호	수사개시일자	0000. 00. 00.	신 병		
죄 명		죄명					

< 피의사실요지 >

비 고	이 사건과 관련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수 신 : 000 귀하

제 목 : 공무원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소속(직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처리 상황	연 월 일	
	내 용	

< 피의사실요지 >

비 고	이 사건과 관련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제 호

출 석 요 구

귀하에 대한 사건(진정인/고소인/고발인 000)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00지방고용노동청(00지청)0000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사실 요지: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 출석시 위임장 지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담당 노동감독관에게 사전에 알려 주시면 진술 조력, 편의 제공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참서류 1.
2.
3.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
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0000과(전화 -)에 연락하여 출석
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처리 과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00. 00. 00.
00지방고용노동청(00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제 호

출 석 요 구

피 의 자 ○○○에 대한 ○○○○ 피의사건에 대하여 문의할 일이있으니
. . 오전(후) 시에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과로 출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 출석시 위임장 지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담당 노동감독관에게 사전에 알려 주시면 진술 조력, 편의 제공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참서류 1.
2.
3.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 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과(전화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
를 협의하거나 사건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처리 과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0 0 0 . 0 0 . 0 0 .

○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 동 감 독 관

(인)

출 석 요 구 통 지 부

[illegible]

※ 작성요령

- 구분란 : "피의자" 또는 "진정인", "참고인" 등으로 기재
- 방법란 :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기재
- 결과란 : 출석일시 및 조사여부를 기재

제 호

참 고 인 출 석 요 구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오전(후) 시에 ○○○○(기관명) ○○과 ○○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요지: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 출석시 위임장 지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담당 노동감독관에게 사전에 알려 주시면 진술 조력, 편의 제공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참서류 1.
2.
3.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 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과(전화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
를 협의하거나 사건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000. 00. 0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심야조사 요청서

요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요 청 일 시	년 월 일 :	
요 청 이 유		

요청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요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심야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0000.00.00.

요청인

(서명)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진술자

㉠

진 술 서					
성 명	()	성 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통 반)	자택번호		직장번호	
직 업		직 장			
1. 위의 사람은 사건의 (피의자, 신고인,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 제출합니다.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illegible]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구 분		내 용
관 련 사 건	피 의 자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조 사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사 건 과 의 관 계	
	연 락 처	
수 사 경 과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장소 떠난 시각	
	조서 미작성 이유	
	조사 외 실시 활동	
	변호인 참여 여부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년 월 일 확인자 특별사법경찰관 근 로 감 독 관 ㉠ ㉡		

영 상 녹 화 물 관 리 대 장

[illegible]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제 목: 체포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2.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려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성명</td> <td></td> </tr> <tr>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직업</td> <td></td> </tr> <tr> <td>주거</td> <td></td> </tr> </table>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범 죄 사 실 및 체 포 를 필 요 로 하 는 사 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 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 한 체포영장 존재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지방공소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체포영장청구								
위와 같이 체포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 사 인									
기각취지 및 이유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제 목: 구속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에 구속하려고 하므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 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범죄 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그 밖의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 지 와 사 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지방공소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년 월 일
제 목	구속영장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영장의 발부 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 사 ㉠		
기각취지 및 이유		

권 리 고 지 확 인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주 거 :

본인은 . . . : 경 에서 체포·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의 이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자

인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
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 동 감 독 관

인

()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 거:

본인은 0000. 00. 00. ():()경 ()에서 ()영장의 사본을 교부받
았으며, 제3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행위 및 명예훼손, 증거인멸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 위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사본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였음
- ☐ 위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사본을 교부하여 피의자가 이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였음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영장반환서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영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환합니다.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영 장 번 호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영 장 반 환 사 유		

첨 부 : 영 장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00지방고용노동청(00지청)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	
다음 사람에게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고 하므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세)
번호인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		
○○지방공소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 사		㉠
기각취지 및 이유		

압 수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와(과) 아
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압 수 경 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참여인				
년 월 일 특별사법경찰관 노 동 감 독 관 특별사법경찰관 노 동 감 독 관				

인

인

압 수 목 록

번호	품 종	수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소 유 자		감독관의견	비고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압수목록 교부서

OOO에 대한 OOOO 피의사건에 관하여 OOO로부터 다음 물건을 압수하였으므로 이에 압수목록을 교부합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임 의 제 출 동 의 서

[제 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주거			

본인은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하며,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사건처리 후에는 처분의견란 기재와 같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0.00.00

제 출 자 : 000 ①

[제출물건]

연번	품종	수량	제출자의 처분의견 (반환의사 유무)	비고

OO지방고용노동청장(OO지청장) 귀하

수 색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와(과) 아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수색하다.				
수 색 장 소				
수색한 신체 개소, 물건				
수 색 결 과				
수 색 시 간		착수 년 월 일		
		종료 년 월 일		
참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특별사법경찰관 노 동 감 독 관 특별사법경찰관 노 동 감 독 관 인 인				

수 색 결 과 증 명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 동 감 독 관

인

검 증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
임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는 특별사법경찰리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검증한다.

1.	검증의 장소(대상)
2 .	검증의 목적
3 .	검증의 참여인
4 .	검증의 경위 및 결과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환부·가환부)

000 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가환부 의견을 요청합니다.

연번	품	종	수량	피압수자	환부·가환부 받을 사람	비 고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압수물 환부 · 가환부 영수증

[영 수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주거			

귀 관서에서 증거품으로 압수 중인 다음 압수물건을 환부 · 가환부 받았습니다.

. . .

영수인 : ①인

피의자						
죄명						
압수번호			접수번호		사건번호	
기록면수	연번	품	종	수량	비	고

OO지방고용노동청장(OO지청장) 귀하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 · ·	
수 신: OO지방공소청		발 신: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항	주 거	직 업	
전 기 통 신 사 업 자			
요 청 사 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OO지방공소청			
수 신		지방법원(지원)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OO지방공소청 검사 ㉠			
기각 취지 및 이유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 동 감 독 관 ㉠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직 업	
요 청 사 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불 임 : 허가서 1부, 노동감독관증 사본 1부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 동 감 독 관 ㉠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				
다음 사람에게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하고 그 수사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종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대상과 범위				
피의 사실요지				
처리내용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수신: 000 귀하 발신: 00지방고용노동청(00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	
우리 청(지청)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허가서번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기관	
전기통신가입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과 종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범위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연 도 별	번호	성 (직 명 업)	금 지 요 청			연 장 요 청			해 제 요 청		비고
			요청공문 번 호 (요청일자)	출국금지 만료기간	요청사유	요청공문 번 호 (요청일자)	연장 후 만료기간	요청사유	요청공문 번 호 (요청일자)	요청사유	

지명수배·지명통보 및 해제대장

지명수배.통보				피 의 자							담당 감독관	수 배 해 제			
결 재		수 배 일련 번호	수 배 일 자	성 명	주 등 번호	직 업 (사 업 체명)	본 적	범 죄 사 실 (죄명)	사 건 공치일	공 소 시 효 만료일		해 제 일 자	해 제 사 유	결 재	
감독관	과 장						주 소							감독관	과 장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귀청(서)에서 지명통보한 피의자 000를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보고(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주 거			
죄 명				
사건번호		0000-000000	수배번호	
수배일자		0000. 00. 00.	수배관서	
발견일시. 장소. 경위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지명통보사실 통지

귀하는 ○○○○노동청에서 ○○○○ 사건으로 수사 중 소재불명 사유로 지명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지명통보자

성 명 :
주 거 :
연 락 처 :
직 장 :

2. 지명통보 개요

죄 명 :
사건번호 : 수배일자 :
사건담당 :

3. 통지 개요

통지일시 :
통지장소 :

통지서를 받은 후 사건담당자에게 연락하여 1개월 안에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정 한 후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자와 연락하시려면 ○○노동청 (000-000-0000)로 전화하여 사건담당자와의 통화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주거지와 연락처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사건담당자와 연락을 회피할 경우,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거나 지명수배될 수 있습니다.

4. 통지자

○○지방고용노동청 ○○○○○○과 노동감독관 ○○○

0000. 00. 00.

특별사법경찰관
노 동 감 독 관

(인)

범 죄 통 계 원 표 대 장

작성 일자	수사 사건부 번호	발생 원표 번호	검거 원표 번호	피의 자표 번호	피의자			발생 일자	검거 일자	피해자 성명 (연령)	송치 의견	결재	
					성명	사업체명	죄명					감독관	과장

■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사 건 송 치 부

송 치 일련번호	송 치 서 결재일자	사건번호	피의자명	사업체명	위 반 법조항	구속여부	송치의견	수사담당 감독관	수령자 (공소청)	송치확인	
										송치담당	과 장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지 청)

수 신 : ○○○ 귀하

제 목 : 사건처리결과 회신

1. 관련: ○○사건(신고인: ○○○, 접수번호: 0000, 접수일자: 0000. 00. 00.)

2.

위반법조항	처리결과	비 고 (송치번호 등)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공소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한 보완
수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보완수사요구 내용		
보완수사 결과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제 호

수 신 :

제 목 :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6항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이행기간		
연장신청 기간		
보완수사요구 내용		
기간 연장 신청 사유		
비	고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노동감독관

(인)

이 의 제 기 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건과의 관계	☐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 법정대리인		
대상사건	죄 명		
	수사관서	사건번호	
이의제기 사유 (해당란 체크)	☐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 노동감독관이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구체적 사유			
첨부서류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고용노동청장(OO지청장) 귀하